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정의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- 분교 이외의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(분교 해당 여부는 응시자 확인 필요)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 ■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□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
-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,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
-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·경기·인천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
- 지방소재 학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·경기·인천소재 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

(예 시)

<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>

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: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<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- ※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
<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>

- 서울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지방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서울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>

-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-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- ※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
<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>

-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: 해당
-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: 비해당

<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>

-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

□ 고졸인재

-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, 학력,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*

*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·휴학자 포함

- 다만,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자에서 제외